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31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양부남 · 김현정 · 민병덕
민형배 · 안도걸 · 이강일
이해식 · 정준호 · 조계원
채현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직권휴직 중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휴직으로 처리하고 있음.

그러나 불임·난임은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신체상의 장애인 질병이라기보다 가족계획과 출산 준비를 위한 치료이므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별도 휴직 사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원휴직 사유로 불임·난임 치료를 신설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가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63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등).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와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또는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

제6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제4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4호의2·제5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3조(휴직) ① (생략)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 ----- ----- -----제4호 와 제4호의2-----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때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 -----제2항제4 호·제4호의2----- -----.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제4호 또 는 제4호의2-----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4조(휴직기간) ----- -----.
1.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 제63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 · 나. (생략)

2. ~ 10. (생략)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 · 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 · 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

--제2항제4호 · 제4호의2-----

-----.

② -----

-----제4
호의2 · 제5호-----

--.

③ · ④ (현행과 같음)